

중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필요한 정부의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법제

정보신청기관 : 대한적십자사

I. 중국의 사회보장법제 및 사회보장재원

중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하여 중국 현행헌법 제4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노년,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의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와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상이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혁명투사의 가족에게는 원호금을 지급하고 군인의 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농아자와 기타 장애자의 노동, 생활, 교육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개별법으로는 「노동법」, 「노동계약(合同)법」, 「부녀권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노인권익보장법」, 「장애자보호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이 있으나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규정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은 아직 없다. 반면에 행정법규(주로 條例, 判法, 決定 등으로 표기, 한국의 총리령), 부문규장(주로 細則, 通知, 規定, 解釋, 意見 등으로 표기, 한국의 부령), 지방성법규(주로 意見, 說明, 方法 등으로 표기, 한국의 조례와 규칙에 해당) 등 파편적인 하위법령으로 중복·모순·충돌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은 국가재정과 정부, 기업, 개인 등 3자가 조성하는 사회보장기금이다. 국가재정의 조달방식은 주로 세금징수로, 사회보장기금은 주로 사회보험비용징수와 복권발행, 사회기부, 정부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은 정부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되고 통제를 받으며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것이 특징이며 사회보험기금, 전국사회보장기금, 보충보장기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양로보험기금을

비롯하여 실업보험, 의료보험, 工傷(산재)보험 및 生育(출산·육아)보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보험비징수 잠정조례 제2조). 계획경제시기 국가를 대신해 기업이 전담하던 사회보장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 등으로 다양하게 전환시키게 된 원인은 계획경제시기 국가를 대신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했던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서방 복지국가 정부들의 복지비용 과다지출이라는 국제적인 선례를 거울삼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중앙재정의 지원 자금, 국유기업주식화자산 매각금 등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여러 경로를 거쳐 조달한 자금 및 기금의 투자수익으로 형성된 기금이다(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잠정관법 제3조).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최저생계보장 등 사회구제(공공구제)와 장애인, 빈민, 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투입되며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거나 복리복권 발행 및 사회 각계가 기부한 것으로 수혜자는 별도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충보장기금은 국가의 기본 보험 외에 고용 단위가 자신의 경제조건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하여 형성하는 기업연금, 기업보충 의료보험 등이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사회보험기금의 누계는 약 1조 2000억 위안, 전국사회보장기금의 누계는 약 8000억 위안, 보충보장연금 누계는 약 420억 위안이다.

II. 세제지원

1. 개인소득세 세제지원

개인과 기업이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 납부한 주택공공적립금, 의료보험금, 기본양로보험금, 실업보험금은 개인의 당기 임금·급여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규정된 비율을 넘어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원래 공제한 주택 공공적립금, 의료보험금, 기본양로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6조).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이직생활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개인소득세법 제4조).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특수수당, 자연탐사수당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보조금, 수당은 면제한다(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13조).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로부터 조달된 복리비 또는 노동조합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생활보조금과 국가민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생계보조비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4조).

출산부녀가 현금 이상 인민정부가 국가의 관련규정에따라제정한출산보험규정에따라취득한출산수당, 출산의료비 또는 기타 출산보험성질의 수당, 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출산수당·보조금 및 출산의료비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퇴직연령에 도달했으나 업무의 필요에 따라 퇴직연령을 연장한 전문가가 퇴직연장기간에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은 퇴직임금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철거로 인하여 이주가 시작되어 국가의 관련 도시건물이주관리관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한 이주보상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도시건물철거관련조세정책에 관한통지 財稅 2005. 제45호).

장애자, 무의탁 노인 및 열사 유족의 소득, 심각한 자연재해로 중대한 손실이 야기된 경우, 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에 감세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비분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액 징수할 수 있다(개인소득세법 제5조). 개인소득세의 감액한도와 감액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16조).

2. 기업소득세(법인세) 세제지원

사회보장기금이사회 또는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자가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 은행계좌의 이자수입, 사회보장기금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수익, 주식투자금, 펀드투자금, 채권투자금, 증권투자펀드의 수익, 주식투자수익, 주식배당금, 채권이자수익 및 산업투자기금수익, 신탁자산투자수익 등 기타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투자관리자 또는 사회보장기금 신탁관리자가 사회보장기금 관리활동에 의해서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재정부·국

가세무총국, 전국사회보장기금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의 통지 財稅 2008, 제226호).

비영리성 공익성기업의 수입은 면세한다. 비영리성이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립자, 기부자, 구성원과 직원 등에게 이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공익성이란 수입을 사회공익서비스 또는 공익성 대상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소득세법 제26조,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제29조).

① 공익법인의 기부금 접수 수입 ② 기업소득세법 제7조가 규정하는 정부재정지원 이외의 기타정부보조금수입, 단 정부조달용역으로 취득한 수입은 제외 ③ 성급 이상의 민정, 재정부문에 규정에 수취한 회비, ④ 면세수입금을 입금한 은행계좌의 이자수입, 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비영리조직기업소득세 면세수입문제의 통지, 비영리조직면세 자격인정관리관련문제의 통지 財稅 2009, 제135호).

장애인 전용용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면제한다(財稅 2006, 제148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한 급여는 장애인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따라 실제로 공제를 한 기초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를 추가로 공제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보장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가 취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추가공제는 국무원이 별도로 관리한다(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96조).

3. 취득세 세제지원

도시근로자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가 규정하는 기준 면적 이내의 공유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시근로자가 취득세 면제를 누리는 것은 최초로 구입한 공유주택에 한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취득세 조례세칙 제13조).

국유, 집체기업의 매각으로 매각된 기업이 말소되고 매수인이 원래 기업의 종업원 30% 이상을 고용승계한 경우 그가 매입한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원래 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고용승계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고용승계란 기업 인수자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래 기업의 종업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고용승계된 종업원과 고용연한을 최단 3년 이상의 노동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법에 따른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기업조직변경상 취득세정책에 관한통지, 財稅 2003, 184호).

기업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파산한 후 채권자가 파산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하여 채무에 충당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파산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하고 그 기업의 근로자 30% 이상을 고용 승계한 경우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원래 기업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 승계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연재해, 전쟁 등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주택을 소실

하여 주택을 재구입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취득세를 감세 또는 면제한다(취득세조례실시세칙 제14조). 철거민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구입 거래가격 중에서 이주보상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거래가격이 이주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징수한다(도시건설철거관련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財稅 2005, 제45호).

4. 영업세 세제지원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구가 제공하는 교육·부양서비스, 결혼소개, 장례업무와 장애인 본인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영업세조례 제6조 제1항). 비영리성 의료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취득한 의료서비스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질병통지기구와 부녀·아동보건기구 등 위생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취득한 위생서비스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병원, 진료 및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찰, 치료, 방역, 출산, 가족계획 및 이들 서비스에 관련된 약품 의료장비, 입원실·식사의 제공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영업세조례실시세칙 제26조 제2호).

개인이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한 거주주택은 3%의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하나 정부가 규정한 가격에 따라 임대한 공유주택 및 연가임대주택은 영업세를 면제한다(재정부·국가세무총국 주택임대시장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財稅 2000, 제125호).

복리복권기관이 복리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수입은 영업세를 비과세한다(복리복권관련 조세 문제에 관한 통지, 財稅 2002, 59호). 서비스업(광고업은 제외)에 종사하는 민정복리기업은 고용한 장애인이 기업생산인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영업세를 면제할 수 있다(민정복리기업 거래세 징수문제에 관한 통지, 國稅發 1994, 제155호).

5. 기타 세제지원

농업, 임업, 종묘업, 목축업, 수산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1차 농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세조례 제16조 제1항).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용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세조례실시세칙 제31조).

재산소유자가 재산을 정부나 고아, 노인, 부상자,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학교에 기증하면서 작성한 문서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문서들에 대하여 면제를 하는 취지는 재산소유자로 하여금 문화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복지를 조성하는 기부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인지세조례실시세칙 제12조).

국가가 지정한 구매부문이 촌민위원회, 농민개인과 체결한 농수산물구매계약은 인지세를 면제한다. 농림작물 목축업류 보험계약의 인지세는 면제한다. 중국의 각 전문은행이 국가 금융정책에 따라 방출한 무이자 이자보조부 대출계약은 인지세를 면제한다(인지세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정부문이 수용한 장애인이 일정 비율을 점하

는 복리공장 용지와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각종 탁아소, 의원, 유치원 용지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이 도시토지사용세의 면세를 결정할 수 있다(토지사용해석규정 제18조).

농촌열사가족, 상이군인, 무의탁자 및 혁명근거지, 소수민족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농촌거주민이 규정된 용지기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경작지 점용세의 납부가 명확히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고 소재지 향, 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금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경작지점용세를 감세 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경작지점용세조례 제10조).

Ⅲ. 재정지원

1. 국가재정

1) 사회보장 예산 및 보조금

중국의 사회보장재정수입원은 세수(稅收)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재정부(財政部)가 사회보장 예산과 보조금을 편성·집행한다. 사회보장예산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국무원, 사회보장예산에 관한 意見, 2009, 제129호). 재 정부는 사회보험의 보조금, 사회보호기금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농취업보조금, 국유기업 실업자 기본생활보조금,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대한 보조금, 국유기업 파산보조금 등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대해 각지의 경제발전 수준과 재정력의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재 정부는 각 지역 지방

정부 간 균형을 위해 사회보조금의 액수, 분배구조, 지출금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 간 균형화 효과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중국관방과 학계 일각에서는 다각적인 세원 발굴과 함께 사회보장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목적제인 '사회보험세'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 국채 발행

중국의 사회보장 재원은 정부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다. 과거 중국의 국채 자금 용도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쓰여 왔으나 근래에는 농촌 농민들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곡물수매 최저가격 상향조정과 공공의료사업, 일자리 창출, 위생, 재난지역 지원 등 사회보장부문에 쓰이고 있다. 특히 중국 재정부는 2009년 11월 취업과 주거 사회보장 의료 공공위생 등 사회보장에 전용(專用)할 용도로 만기 50년 장기 국채를 사상 처음 발행했다. 발행물량은 200억 위안이며 이율은 연 4.3%이다.

3) 복지복권발행

중국 중앙재정부와 각 지방정부 산하의 복권 발행기관에서 각종 유형의 복권을 발행함으로써 사회구제와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을 조성한다. 중국의 복권수익은 전국사회보장기금, 중앙전용(中央專用)복권공익자금, 민정부와 국가체육총국 등이 60: 30: 5: 5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정책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는 102억여위안, 중앙전용복권공익자금 51억 위

안, 민정부와 국가체육총국에는 8.5억 위안을 배분하였다(재정부공고, 2009, 제24호 문건).

4) 토지양도수입금

토지양도수입은 종래와는 달리 전액 지방정부 예산에 편성되고 지방 국고에 불입되도록 함으로써 수입과 지출, 두 분야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토지양도수입금은 토지보상비, 이전비, 피수용지 농민의 생활보장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자금은 농지개발 및 농촌 인프라 정비, 경제성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도록 그 사용처를 명시하였다(토지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2006, 제223호).

5) 기업의 사회기부금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사업에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사회의 자선 기부 활동 지원에 나선 것임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우대정책은 중국 부유층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여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중국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2.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예산의 예도 사회보장의 확대에 따라 거액의 사회보장기금(사회보험기금+전국사회보장보험)이 누적되어 이른바 '제2 사회

보장제정'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가 재정 사회보장예산제도 수립 이전에는 우선 예산 외자금관리제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재정과 회계감독을 한다(예산외 자금관리강화에 관한 결정, 국무원, 1996, 제29호).

1) 전국사회보장기금

2000년 8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전국사회보장기금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를 설립하고 동 기금이사회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운영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전국사회보험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중요전략자금으로써 사회복지와 사회구제 등 사회보장재원을 보충하는 기금이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성(省), 시(市) 또는 현(縣)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과 달리 중앙정부가 집중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재원은 중앙재정예산지원, 주식화 국유기업의 정부지분 매각, 국무원의 비준을 경유한 기타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 기금의 투자수익, 주식재산이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국무원 직속의 부장급(장관급) 사업조직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의 독립법인기구로서 동 기금이사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재정지원자금의 관리, 국유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 및 기타 방식으로 재원 확보, ②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투자전략의 제정 조직화, ③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자, 위탁인의 선발과 전국사회보장기금자산에 투자운영과 신탁관리와 투자운영과 신탁관리현황에 대한 조사, 규정범위 내의 전국사회보장기금자산에 직접투자운영, ④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재무관리회계심사, 정기재무회계제표, 재무회계보고의 기초, ⑤ 정기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자산, 수익, 현금유통량 등 재무상황 정기발표, ⑥ 재정부, 인력관리사회보장부가 공동 하달한 지령과 확정된 방식에 근거하여 자금지출, ⑦ 국무원이 위임한 기타사항,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는 행정사무부, 재무회계부, 투자부, 법규 및 감독부 등 4개 직능기구를 설치한다(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 잠정판법, 국무원, 2001. 12. 13 제정).

2) 사회보험기금

(1) 양로보험기금

중국 양로보험기금의 재원은 ① 사업장과 근로자가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비, ② 사업장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보충양로 보험비, ③ 근로자가 지원하여 납부하는 개인저축성 양로보험비, ④ 규정에 의거하여 수납하는 체납금, ⑤ 기금의 예금이자, ⑥ 기금보험가격의 증가에 의한 수입, ⑦ 중앙 및 지방정부재정 보조금, ⑧ 노동계약제 근로자의 기금전환에 의한 수입, ⑨ 기타 수입 등이다. 양로보험기금은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업의 부담을 위주로 한다. 국가는 양로보험기금의 세금, 이자, 보조의 방식으로 부담한다(양로보험조례 제12조). 양로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 보조금 중 95% 이상이 중앙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기본양로보험금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상계한다.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및 신장(新疆)지역생산건설병단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출한다. 양로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 소요되는 재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충당한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정수준과 방법은 여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각지의 실제 상황과 근로자기본양로보호금의 지불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기업퇴직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 조정에 관한 통지, 人事部發 2008, 102호).

(2) 실업보험기금

실업보험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의 실업보험기금은 ① 도시기업 사업단위와 그 근로자가 납부하는 실업보험, ② 실업보험 기금의 이자, ③ 국가재정보조금, ④ 법에 의거한 실업보험기금내의 기타 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기업 사업단위는 임금총액의 2%를 실업보험비로 납부해야 하고 도시기업 사업단위 근로자는 본인 임금의 1%를 실업보험비로 납부해야 하며, 도시기업사업단위에서 모집하여 채용한 농민계약제근로자본인은 실업보험비 납부를 면제한다. 실업보험조정금은 통합지역이 법에 의거하여 징수해야 하는 실업보험비를 기준으로 하여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 규정에 비례하여 조달한다. 통합실업보험지역의 실업보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업보험 조정금으로 조정하거나 지방 재정으로 보조한다.

(3) 산재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은 ① 고용단위가 납부한 산재보험비, ② 산재보험비의 체납금, ③ 산재보험기금의 이익, ④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기금이 제

원이 된다.

산재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계좌에 예입하며, 규정된 산재보험 혜택과 노동능력 감정 및 법률, 법규가 규정한 곳에 쓰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기타비용 지불로도 쓰인다. 산재보험기금은 일정비율의 비축금을 남겨두어야 하며, 통합산재보험지역의 중대한 사고에 산재보험기금을 지급한다. 비축금의 지급이 부족하면 통합산재보험지역의 인민정부가 대신 제공한다.

(4) 출산·육아 보험기금

중국의 출산·육아보험기금은 지출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달하며, 현지의 인민정부에서 계획한 출산인원 수와 출산보조금, 출산의료비 등 비용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최대금액은 임금총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은 정부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현지의 사회보험담당기관에 납부한다. 출산·육아보험기금은 사회보험담당기관이 은행에 개설한 출산보험기금의 전용계좌에 예입하고 특별비용으로만 사용한다. 국가는 출산·육아보험기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동기금의 조달과 사용은 재정에결산제도를 실행하여 사회보험담당기관은 매년 보고하고, 동급 재정부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5) 사회보험비의 징수 행정관리감독 지원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문(人力資源社會保障部)은 전국의 사회보험료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고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

문(勞動社會保障局)은 해당 행정구역의 사회보험료 징수를 관리 감독한다.

3%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을 물리고, 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기금 일부를 감면해 준다. 특히 고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청년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계속 고용을 정식으로 문서화하는 기업에는 사회보험기금의 10%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비용을 납부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에게 1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에 대해 공표하여 근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험담당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일반에 사회보험료 징수상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보험기금을 유용한 경우 유용된 사회보험기금을 추징하고 불법소득이 있으면 이를 몰수하여 사회보장기금으로 계상한다.

비용납부단위가 규정에 위반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장행정부문이나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명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액 외에 미납일로부터 매일 2%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하며, 체납금은 사회보험기금에 계상한다. 징수된 사회보장비는 재정부가 국유 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전문계좌로 예치한다. 사회보험기금은 면세하고 기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 효 백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교수)